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886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2
--------------------------------	---

2. 웹소설 및 웹툰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조치요구권 신설	9
--	---

※ 참고자료

1. 도서정가제 개요 및 연혁	13
------------------------	----

2. 관련 협회 등 의견	14
---------------------	----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16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1. 26.

다. 회 부 일: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웹소설·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가. 개정안 요지

- 웹소설 정의 신설 및 웹소설·웹툰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안 제22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3. (생략) <u><신설></u>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2.·3. (현행과 같음)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체계를 표시한 다음 각 목의 간행물 가. 웹소설[「정보통신망 이

현행	개정안
	<u>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서 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 “웹툰”이라 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

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회 복지시설 및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출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7년부터 출판 및 서점업계 간 자율협약으로 실시해 오다가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 판매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2003년에 법제화되었음¹⁾.

[도서정가제 개요]

도입 취지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내용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발행 후 12개월 경과 시 정가 변경 가능
적용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또는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를 발급받은 전자출판물 포함
규제 재검토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 의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제외하여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웹소설 및 웹툰 업계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와

1) 동 검토보고서 12p [참고1 도서정가제 연혁 및 개요] 참조

저자 양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웹소설 및 웹툰은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달리 주로 연재 형태로 발행되고 작품 회차당 정가²⁾가 낮아 작품 간 정가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인기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인해 효과적인 프로모션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웹소설 및 웹툰에 한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종이출판물이나 기타 순수 전자출판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2019년부터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온 과제³⁾로서, 전통적 간행물과 차이가 존재하는 웹툰 및 웹소설의 특성⁴⁾ 및 최근 민관협의체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으나, 협의체 결정 내용⁵⁾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웹소설·웹툰 등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이 아닌 웹콘텐츠는 추후 별도

2) 네이버시리즈 및 카카오페이지의 회차당 소장 정가: 웹소설 100원 내외, 웹툰 400원~500원 내외

3) 전자책에 대한 규제 폐지 또는 별도 적용 등 도서정가제 완화 관련 청원('19.10.14~'21.11.13)은 209,133명

4) 문체부는 웹툰, 웹소설의 경우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며 산업 특성상 작품의 생산 및 소비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제2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폐지, 강화·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규제 검토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웹소설·웹툰 등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이 아닌 웹콘텐츠는 추후 별도의 제도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이었음.(2023.5.18. 민관협의체 합의)

의 제도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출판 및 웹툰·웹소설 관련 협회 측에서 제시한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대한 의견⁶⁾이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포함,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웹콘텐츠의 구체적인 규율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웹소설과 웹툰의 정의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웹소설의 범위에 “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제외하여 기존의 종이소설을 전자출판물화한 상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6)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에 대해 웹툰 관련 협회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자출판협회 및 웹소설 관련 협회 등은 대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검토보고서 13p [참고2 관련 협회 등 의견] 참조

[웹소설 및 웹툰의 정의]

웹소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서 <u>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제외한 것</u>
웹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u>제작된 만화</u> (「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의2)
디지털 만화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만화진흥법」 제2조제5호)

- 한편, 「만화진흥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만화와 웹툰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디지털만화’는 기존의 종이만화를 디지털파일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웹툰’은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각각 구분⁷⁾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⁸⁾은 “제작”에 대해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에 따라, ‘웹툰’은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디지털만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비록 「만화진흥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디지털만화와 웹툰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웹소설의 정의와 동일하게 나목의 웹툰의 정의에서 디지털만화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2. 웹소설 및 웹툰에 관한 유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조치요구권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웹소설 및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안 제23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u>

3.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2의 금지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그 검토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할 시 유통사가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하는 상

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비용전가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게 되며, 공정위는 문체부의 조치 요청을 받고 6개월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하여야 함.

- 이는 「공정거래법」 등 타법 상 불공정행위 관련 처벌 조항이 존재하나, 처리 결과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치 요구 권한 및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비용전가에 대한 문체부의 자체적인 제재 근거가 없고, 「만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체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동 조치요구권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불공정행위 조치요청에 관한 유사입법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80

□ 도서정가제 개요

-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 도입 취지 : △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 내 용 :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 (간행물 정의)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및 ISBN(국제표준도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부여) 등을 표시한 것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정가 변경 가능

- 적용 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출판물 포함
 - *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중고 간행물, 국내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외국 발행 간행물은 제외
 -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도 ISBN(또는 ECN) 등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간행물에 해당되면 적용대상임
- 제도 재검토 결과 : 현행 유지하되,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방안 모색
 - *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명시(출판법 제27의2) / 금번시한 : '23.11.20.

□ 도서정가제 연혁

- ('77.12월) 출판·서점업계, 자율협약으로 정가판매제 시행
- ('03.2월)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으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서점조합연합회의 입법 청원으로 출판·인쇄 진흥법 제정, 도서정가제 법제화
- ('08.1월) 오프라인서점 차별 삭제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 5년 한시적 시행 조항 삭제, 신간(18개월 이내)만 적용, 온라인·오프서점 동일하게 10%할인 허용
- ('12.7월) 전자책 정가제 본격 적용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14.1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 * 적용 범위 확대(발행 후 18개월 이내 → 모든 간행물), 할인을 인하(19%→15%),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등
- ('22.2월) 규제 재검토에 따라 개선 반영된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 재정가 가능 기한 축소(발행 후 18개월→12개월),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등
- ('23.8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 신설

참고 2

관련 협회 등 의견(웹소설 정의 및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 웹툰, 웹소설계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웹소설 작가협회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출혈경쟁이 심화되어 플랫폼사, 출판사, 매니지먼트사, 작가에게 모두 불이익이 될 문제이기에 반대함 - 오히려 100년 대여 등 제도 회피를 막기 위한 대여의 기간 법제화 필요함
한국웹소설 협회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단행본은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키면서, 연재는 도서가 아니어서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려움
한국전자출판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전자출판물 중 “웹소설”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물도 상당수 존재하기에 “웹소설”만 별도의 정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나 전자출판물 정의에 위배됨 - 유사 출판물인 “웹툰”은 별도 신설하지 않으면서 “웹소설”만 신설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법 개정으로 판단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그러나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해서 일반 E북 만화 단행본이나 소설과 다른 판매 유형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 현행 비대칭적인 산업 구조에서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또는 구독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덤핑 판매가 우려됨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웹소설은 연재의 특성을 갖고 있음. 현재안은 ‘신작을 정보통신망에 최초로 공개한 웹소설’과 ‘이미 출판된 구작을 웹소설 형태로 변형시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작품’을 구별해서 도서정가제를 구분해야 하나 쉽지 않고, 작가가 본의 아니게 범법행할 수 있음 - 웹소설에 ‘최초’라는 조건을 붙일 경우 작가들은 ‘종이책 출판’으로 먼저 출판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어 출판산업에 부정적 영향 - 종이책으로 출판된 구작을 웹소설 형태로 변형시켜서 디지털화 하여 연재 형태로 유통하는 경우 제2창작으로 보아 웹소설로 간주해야함
한국웹소설 작가 연합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프로모션 제안/역제안 경우 개별적으로 합의 후 기대수익의 계산과 계산이유를 공유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합당한 요율을 조정 요구가능해야함 -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그 비용에 걸맞게 비율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고, 자체 배너 등 자체 조달 시 비용 산정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 필요함 - 매출(순이익 X) 비율로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옳음.
한국웹툰 산업협회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웹툰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로 도서정가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웹툰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출판계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출판인회의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정보통신망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된 것만 웹소설로 본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종이책 기반이 아닌 원천 콘텐츠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 - 기존 법 또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서 '소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웹소설'의 정의규정에 '소설'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전자책과 웹소설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혼란 발생 가능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도서정가제의 적용 여부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보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마땅함. - 개정안에서 밝힌 '웹소설'의 정의를 통해 '웹소설'과 '전자책',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위 경향성이 '종이책 기반의 전자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전자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출판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웹툰 및 웹소설 판매촉진 비용에 대한 저자, 출판사 부담 전가 금지(안 제23조제1항제3호) - 윌의 위치에 있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절대적인 갑인 대형 플랫폼의 요구, 즉 합의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기에,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없음.
대한출판문화협회	• 웹소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의2호) - 전자출판물과 구분이 모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창작물의 발행 방식 제한에 따른 권리자의 선택권 침해 우려도 있음. - 웹소설의 별도 정의가 아닌 웹툰/웹소설의 별도 식별체계를 신규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웹툰 및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안 제22조제7항제5호) - 도서정가제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출판 산업의 발전, 건전한 출판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함

참고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판례 번호	판결기관 (판결일자)	판결 주요내용
2020헌 마104	헌법재판소 (23.7.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법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출판법 제27조의2), 사회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침해성을 충족함 • 한편,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종이출판물과 전자출판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합헌) 판결